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2023. 5.



한국물기술인증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제7호에 대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조제1항, 「하수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에 대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조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상·하수도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한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인증원이 적합인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1. 적합인증이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인증원이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적합기준”이란 적합인증 취득을 위해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으로서 국민의 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품 및 사용재료 등에 요구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3. “인증심사기준”이란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 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품 인증심사기준으로, 적합기준별로 인증원이 따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공장심사기준”이란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등 제품 제조과정 중 기술적 생산조건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적합인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란 적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자 중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원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사”란 인증원이 신청자에 대하여 인증대상 제품이 적합기준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심사”, “인증변경심사” 등을 말한다.
7. “공장심사”란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적합기준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제품심사”란 제품의 품질이 해당 적합기준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성능시험과 재료시험으로 구분된다.
9. “정기심사”란 인증원이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제품이 적합기준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시검사”란 인증기업의 인증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써, 특별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로 구분된다.
11. “공장이전심사”란 인증원이 인증받은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移轉)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적합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란 인증받은 자가 그 제품 또는 포장 등에 적합기준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3. “인증받은 자”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인증받은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각 위원회

제4조(적합인증 심의위원회) ① 적합인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원에 적합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합인증 절차에 의해 수행된 공장심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등에 근거한 인증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받은 자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인증취소 등 처분에 관한 사항
3. 인증제품의 문제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원장이 적합인증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계, 금속, 화학, 토목, 환경 등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50인 이상의 인력풀로 구성하고, 인력풀로부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마다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개최, 대면/서면회의 결정 등 위원회의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증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인증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하여 인증원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적합인증 심사위원회) ① 적합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인증원에 적합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합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적합인증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원장이 적합인증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합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관련 의견을 자문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위원) ① 인증원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최초로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7.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그 밖에 인증원장이 상기 해촉사유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궐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인력풀에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제11조(서면결의)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심의·의결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원장이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서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적합인증 대상품목

제12조(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신청) ①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그 밖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상품목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인증원장은 대상품목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등) ① 적합인증 대상품목은 상·하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와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한다.

② 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증원장이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적합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로부터 의견수렴 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재와 제품일 것
 2.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④ 인증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을 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
- ⑤ 인증원장은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시 이를 인증등록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품목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을 지정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 제14조(적합기준 제정 또는 개정)** ① 인증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적합기준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이때,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자는 대상품목에 대한 적합기준안을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적합기준의 형식은 KS A 0001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인정한 별도 양식을 적용하거나 외국의 국가 또는 단체표준 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원장은 적합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현장조사, 성능분석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교육·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인증원장은 적합기준안을 작성하여 인증등록정보망에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적합기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적합기준으로 확정한다.

⑥ 인증원장은 적합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적합기준과 그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 또는 개정된 적합기준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시행일 이전까지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소급(遡及)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적합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후 인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적합기준 제·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표준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인증받은 제품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표준 제·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인증을 취득하고 적합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적합기준의 개정요청) ① 적합기준의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그 밖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적합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 등에 따라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적합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적합기준의 폐지) ① 인증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적합기준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적합기준 폐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 및 특별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적합기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인증등록정보망에 고시하고, 7일 이내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합기준 폐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⑤ 인증원장은 적합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 폐지된 적합기준과 그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① 인증원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적합기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별표 1」의 인증심사기준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으로 구분한다.

1. 공장심사기준

2.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

③ 인증원장은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심사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인증심사기준의 폐지 절차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인증원장은 적합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개정 및 폐지된 인증심사기준 및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간담회 등)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적합인증 대상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적합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인증절차 및 방법

제19조(인증심사) ① 인증원장은 신청제품이 해당 제품의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적합인증의 인증심사는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본 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0조(인증심사원) ① 인증원장은 인증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규심사, 인증재심사, 정기심사, 인증변경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심사원에게 인증기준 관리 또는 인증

기준에 따른 검증 등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심사원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1조(적합인증 신청 등) ① 적합인증의 신청은 신규심사, 인증재심사, 정기심사, 인증변경심사(종류·등급 추가, 재료추가, 호칭추가, 공장이전) 등 심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외에 신청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내표준 또는 절차서 목록서
 2. 신청제품 표준 및 도면
 3. 신청제품 공정·제조설비에 관한 명세서
 4. 신청제품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5. 주요 자재 관리 목록
 6. 사용재료 확인서
 7. 신청제품의 사진 및 분해도
 8. 제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신청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검토) ① 인증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보완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료 보완기간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기한 내에 서류보완 또는 공장심사를 기피하거나 수수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미납하는 등 인증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인증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이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반환은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3조(공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지) ① 인증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서류검토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공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공장심사일정 및 인증심사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류검토가 완료된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공장심사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비용납부 후 40일 이내에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심사 일정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증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별표 2」와 제44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공장심사일정 및 인증심사원 통보 후 인증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을 배정함에 있어 해당 공장심사에 관한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공장심사 등) ① 공장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신규, 인증변경(종류·등급추가, 재료추가, 호칭추가, 공장이전): 최근 3개월간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2. 정기심사: 최근 1년간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3. 수시검사: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②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공장
심사를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인증심사원의 공장심사 업무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장심사기준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의
80% 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⑥ 제25조제10항 또는 제32조에 따라 제품심사만 실시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라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기준 및
평가의 작성은 생략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현장조사에서 문제 등이 발견된 경우

2. 인증받은 제품이 주요자재 또는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변화가
있는 경우

- ⑧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인증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⑨ 인증심사원이 공장심사에서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료재채취를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시료재채취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인증원장은 신청자가 공장심사 이후 제25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기피하거나 제9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험의뢰를 지연하는 경우와 같이 인증심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인증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품심사 등) ① 인증심사원은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증원장은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의뢰할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④ 제품별 또는 재료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료채취 방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인증변경 신청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사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인증재심사 신청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설비 구축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자의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때

2. 시험기관의 시험설비가 미비한 때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기관이 없을 때

4. 시료의 이동(移動)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때

⑧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해당 시험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가 인증신청한 제품으로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인증신청 제품의 사용재료가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⑩ 인증원장은 제24조에 따른 공장심사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제품시험의뢰서, 시료 및 시편을 공인시험기관에 1개월 이상 시험의뢰 요청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심사비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1개월 이상 제품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⑪ 제10항에 소요되는 여비와 인증심사원 수당은 「별표 2」에 따르며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6조(인증심의) ① 인증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적합인증의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인증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① 인증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에 대하여 인증원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기업명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6호의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인증원장은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원장은 적합인증을 결정한 경우 적합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와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합인증 업무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

2. 인증계약기간

3. 적합인증마크 등의 인증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 자의 인증제품 광고에 관한 사항

5. 인증받은 자의 인증원 보고사항, 수시검사 및 판매정지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취소 및 인증계약의 종류에 관한 사항
 7. 정기심사 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원이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8.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 ③ 인증원장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인증종료(인증취소도 포함한다) 내용을 인증등록정보망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인증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번호
 2. 종료한 인증계약에 관한 인증받은 자의 공장명(회사명) 및 소재지
 3. 인증서 기재사항
 4.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

제2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원장은 신청제품이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신청자와 제28조에 따른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성명, 공장소재지,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등급, 호칭, 재료, 인증서 발급일, 인증기관명, 인증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적합기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제30조(인증마크) ① 인증받은 자는 각 제품별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별표 5」의 적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별표 5]의 다. 1.에 해당하여 표시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공장심사 이전에 인증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서비스, 홍보물,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적합인증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적합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원장은 인증받은 자가 적합인증마크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인증받지 않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홍보물 등에 해당 제품이 적합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인증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및 재료를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원장은 제19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공장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이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공장이전 심사를 신청받은 경우 제22조에 따라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별표 6」에 따라 인증심사원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심사를 실시한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인증원장은 제19조에 따라 인증결정 시 변경사항이 기재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받은 자가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부품, 모듈, 재료 등)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인증받은 자는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주요 자재 또는 시험(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 관리 목록 또는 시험(검사)설비 목록을 인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에 앞서 인증원장에게 제1호에 따른 목록을 사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원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받은 자에게 시험 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 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 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원은 해당 제품이 적합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인증재심사) ① 신규 또는 인증 변경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하여 1년 이내에 동일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만을 실시한다.

② 제39조에 따른 청문 결과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품심사 재실시 결과 동일 신청제품에 대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인증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33조(정기심사) ① 적합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기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할 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인증제품을 한꺼번에 정기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제품을 기준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일괄신청된 제품의 인증 만료일은 신청제품 중 가장 앞선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④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공장이전 심사 이후의 정기심사는 공장이전 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⑤ 인증 만료일 전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 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수시검사) ① “특별현장조사”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증원장은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 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납품 수요처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인증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생산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인증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적합기준을 제·개정하는 이해관계자 간에 적합기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증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9.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적합기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적합인증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판품조사”란 적합인증 제품의 유통·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품의 제품시험을 말한다.

④ 인증원장은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특별현장조사 결과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증원장이 인증제품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에 대하여 인증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하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⑦ 수시검사 결과가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서 재발급)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인증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영문인증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의한 인증서 재발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인증받은 자가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이 진행 중인 인증서는 통합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통합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제품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때 나머지 인증서는 자동 반납 처리한다.

⑦ 인증서를 통합하는 경우 신청한 인증서의 처분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한다.

제36조(지위승계) ① 인증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는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종전의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인증받은 자에 대한 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와 다음의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회사합병 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위승계를 하는 기업과 받는 기업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신고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처분

제37조(표시정지 등의 명령) ① 인증원장은 제33조에 의한 정기심사, 제34조에 의한 수시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30조의 적합인증마크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 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인증원장은 제2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2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처분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1개월 내 인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제출서류만으로 이행여부의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44조에 따라 해당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인증원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의 검토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인증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별표 4」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기간 내에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별표 4」에 따른 연속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의 서류제출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별표 4」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제3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원장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그 적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 또는 적합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4. 인증심사(신규, 정기, 변경 및 수시검사 등)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심사 등의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한 때
10. 적합인증마크 등을 허위로 표시한 때

11.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37조에 의한 시정 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인증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청문) ① 인증원장은 제27조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심의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제출의견의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의 종결 및 반영) ① 인증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 절차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8장 자료의 관리

제41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장은 적합인증제품의 정보를 수요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성능인증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인증원장은 적합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적합인증 분류체계
2. 제품명 및 인증번호
3. 종류·등급, 호칭, 재료 등
4. 인증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적합인증제품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인증원장은 적합기준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행일까지 인증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적합기준명 및 제·개정 전문
2. 의견 제출기간
3. 시행일

제42조(자료제출)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속 3개월 이상 제품제조를 중단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적합인증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자료
2. 적합인증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再開)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제품제조 재개일에 관한 자료
3. 제37조에 따라 표시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② 인증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적합인증제품의 제조중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조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중단기간 중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가 재개된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문서의 비치·보존) 인증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적합인증 신청제품의 제조(가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적합인증 신청제품의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3. 적합인증 신청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4. 적합인증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5. 적합인증 신청제품의 성능시험에 관한 서류

제9장 수수료 및 처리기간

제44조(수수료) ① 신규심사, 인증재심사, 인증변경, 정기심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시험수수료는 시험의뢰 시 시험·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신청자로부터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철회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 개시 이후 인증신청을 철회하거나 거부·방해·기피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납부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처리기간) ① 제21조에 따라 인증이 신청된 경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심의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은 50일로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의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부 후 10일로 한다.

③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부 후 15일로 한다.

④ 제36조에 따른 지위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부 후 15일로 한다.

⑤ 처리기간 산정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신청기업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시료의 시험분석기간

3. 신청기업의 사유로 공장심사 등이 지연된 기간

4. 공장이 해외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해외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부 칙(2019. 12. 0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계약의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적합인증의 계약에 관하여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승계한다.

부 칙(2022. 08.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요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2023. 02. 0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인증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요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2023. 05.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인증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요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1. 공장심사기준

가.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항목	적합기준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p><비고></p> <p>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나.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 또는 관리 항목	적합기준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및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 품질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적합기준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적합기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4) 이행사항	<p>가)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p> <p>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p> <p>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적합기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같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적합기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p>1) 주요 설비명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 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 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p> <p>가) 해당 적합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p> <p>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p>
<p><비고></p> <p>제품이 적합기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p> <p>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p>	

2.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

가.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은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적합기준에 따른 제품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1) 제품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공장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2) 제품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적합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 6) 제품의 인증구분

나.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적합기준번호
- 2) 적합기준명
- 3) 제정연월일
- 4) 개정연월일(개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2]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 수수료(VAT 별도)

항 목	수 수 료
가. 신청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정보망 운영, 서류검토 및 위원회 수당, 회의비,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처리를 위한 실비로 2제품까지는 제품당 250만원으로 하며, 2제품 초과 시 초과제품당 125만원으로 한다. 단, 총금액은 1,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인증재심사, 시료채취 등 공장심사 또는 제품시험 등이 생략 되는 경우 제품당 125만원으로 한다.
나.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에 따른다. 단, 운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시하는 KTX 운임에 따라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장소재지에 따라 KTX운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시외버스 운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국내심사의 경우에만함) ○ 1건당 1일(8시간)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편도 250km이상의 경우 1일 추가)
다. 공장심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해외심사의 경우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16시간)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라.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00원으로 한다.

※ 비고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별표 3]

심의위원의 자격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의 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기계, 금속, 화학, 토목, 환경 분야 등에서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을 가진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4. 물산업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 관련 기술사 자격소지자
6.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KS심사원 중 심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7. 소비자단체 또는 제조자 단체 등에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학식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상기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한 자

다만, 심의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자, 소비자단체 및 제조자 단체는 배제한다.

처분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나. 제품심사 결과 불합격 항목이 있을 때는 처분기간 내에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또는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처분기간 내에 재시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을 승계한다.
-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표시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바.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공공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정지 및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취소		
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다. 정기심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인증제품이 「별표 1」 및 적합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1) 공장심사결과 판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총 평점이 80% 미만 60% 이상일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1개월	인증취소
	총 평점이 60% 미만 40% 이상일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총 평점이 40% 미만일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제품심사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경결함(표시위반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취소		

라. 인증심사(신규, 정기, 변경 및 수시검사 등)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신청반려 · 인증취소		
마.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인증취소		
사. 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아. 정기심사 등의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한 때			
(1) 제품의 용도, 종류·등급, 호칭 등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제조 공장이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p>차. 적합인증마크 등을 허위로 표시한 때</p>			
<p>(1)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않은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p>	<p>표시정지 3개월</p>	<p>표시정지 6개월</p>	<p>인증취소</p>
<p>(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p>	<p>표시정지 3개월</p>	<p>표시정지 6개월</p>	<p>인증취소</p>
<p>(3)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p>	<p>표시정지 3개월</p>	<p>표시정지 6개월</p>	<p>인증취소</p>
<p>(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p>	<p>표시정지 3개월</p>	<p>표시정지 6개월</p>	<p>인증취소</p>
<p>카.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제34조에 의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표시정지 3개월</p>	<p>표시정지 6개월</p>	<p>인증취소</p>

[별표 5]

적합인증 인증마크 및 표시 등

가. 인증마크 및 표시비율



그림 1. 적합인증 인증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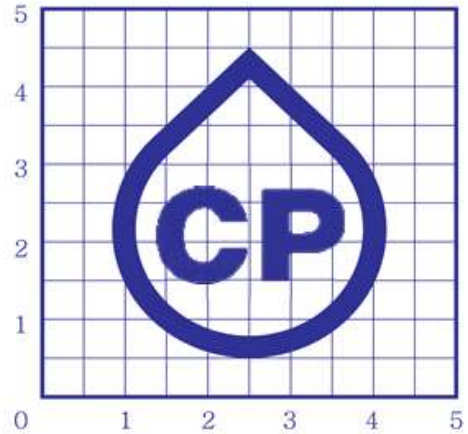


그림 2. 인증마크 비율

나. 인증마크 표시방법

1. KIWATEC는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CP는 Conformity Product의 약자이다.
2. 적합인증 인증마크 표시는 인증제품의 표시 편의를 위하여 인증원에서 정하는 위치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인증마크는 인증제품의 형상, 크기 등에 따라 동일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시사항

1. 표시사항은 각 제품별 심사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1) 소형제품 등의 사유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 2) 표시로 인해 제품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인증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 등의 표면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및 공장심사 소요일

가.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및 제품시험(국내인증)

신청구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1개 제품 기준)	제품시험
신규인증		2인	2일	실시
정기심사		2인	1일	실시
인증 변경	공장이전	2인	1일	실시
	종류·등급, 호칭 및 재료 추가	2인	1일	실시
인증재심사(시료채취)		1인	1일	실시

나.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및 제품시험(해외인증)

신청구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1개 제품 기준)	제품시험
신규인증		2인	2일	실시
정기심사		2인	2일	실시
인증 변경	공장이전	2인	2일	실시
	종류·등급, 호칭 및 재료 추가	2인	1일	실시
인증재심사(시료채취)		1인	1일	실시

비고 1. 심사일수는 1개 또는 2개 제품 최대 2일, 3개 제품 또는 4개 제품은 최대 3일, 5개 제품 이상인 경우는 최대 5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나 외부 시험·검사 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제품 등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비고 2. 신청 시 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통합하여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상품목에 따라 1일 이내에서 공장심사 소요일을 단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

구 분 : 제 호

의 안 명 :

내 용 :

위 의안을 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 안 명	심의결과		
		가	부	의 견

상기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심 의 위 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합인증 신청서										
회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TEL				
		공장				FAX				
	설립년월일				공장규모	대지:	m ² / 건물:	m ²		
사	인가상 상황	KS, 단체표준인증취득								
		외국규격취득일								
		기 타 인 증								
현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영 업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항	종 업 원 수 (C)	경 영 간 부		연구개발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설비자동화율 (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기 타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계										
신청제품	적합기준명									
KC, 적합 인증 받은 제품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품명	등급 및 호칭	용도				
품질관리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자격증번호					
	E-mail				직통번호 (또는 H.P)					
<p>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신청범위 2. 사내 표준 또는 절차서 목록서 3. 신청제품 표준서 및 도면 4. 신청제품의 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5. 신청제품의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주요 자재관리 목록 7. 사용재료 확인서 8. KS 또는 단체표준 제품과의 차이점 설명서(해당하는 경우) 9. 제품 사진 및 분해도 								수 수 료		
								[별표 2] 참조		

<첨부 1>

인증범위 확인 내용

I. 인증 신청 범위

○ 적합기준명 :

<종류 · 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지름(mm)	주요재료

위와 같이 적합인증 신청 범위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첨부1>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NO	구 분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공칭 능력 (제원, 정밀도)	제 작 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2>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NO	구 분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공칭 능력 (제원, 정밀도)	제 작 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고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3>

자재 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우리 회사에서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4>

KS 또는 단체표준과의 차이점(해당하는 경우)

KS 또는 단체표준명(번호)	구분	KS 또는 단체표준 제품	신청제품
	구조		
	사용 재료		
	호칭압력		
	사용호칭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 5>

사용 재료 확인서

제품명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사용부품 또는 사용개소	사용재료			비고
			표준번호	제품명	재료명	
						※ 재료 시험 이 있을 경우 재료시편을 제 작하여 시험기 관에 의뢰함.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장 심 사 보 고 서

[적합인증 - 신규, 종류(호칭, 재료), 정기(공장이전)]

1. 공장심사 현황

공장(회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E - mail			
신 청 품 목 (기준번호)			종류·등급 또는 호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청 일자			심사 일정			
심사결과 요약						
심 사 결 과	심사 사항	심 사 항목수	배점	평점	총 평점	판정
	자재의 관리	8	20			
	공정·제조설비관리	8	26			
	제품의 품질관리	10	34			
	검사설비의 관리	6	20			
	계	32	100			

- 주: 1.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점수 부여 방법은 표준(규정, 문서, 기록, 데이터)의 유무 및 실행(구축) 수준 등 모든 평가항목별로 100%(만점), 50%(배점의 1/2), 0%(0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100%(만점)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는다.
 4.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원	성명	(인)
기관명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원	성명	(인)

<첨부 1>

인증범위 확인 내용

I. 인증 신청 범위

○ 적합기준명 :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지름(mm)	비고
		※ 주요 재료

위와 같이 적합인증 신청 범위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대표이사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

총 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상이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보유수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적합인증 표시 제품 생산계획(연)	백만원	기타 생산품	
소요 원자재			
회사 연혁			
특기 사항			

3. 공장심사기준 및 평가

심사사항	평가 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1. 자재의 관리: (8항목 / 20점)	①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또는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2		
	② 원부자재가 단체표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단체표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	2		
	③ 원부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2		
	④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4		
	※ 비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원·부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원부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시험기관 등을 규정 * 자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원부자재와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원부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⑤ 인수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		
	⑥ 인수검사 담당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인수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규정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 비고 * 인수검사규정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료 채취, 로트 판정, 자체에서 시험하는 품질항목에 대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⑦ 원부자재 인수검사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	3		
	⑧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3		
※ 비고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 관련된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계	20		

심사 사항	평가 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2. 공정·제조 설비 관리 (8 항목 / 26점)	①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4		
	②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		
	③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2		
	④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 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4		
	⑤ 불합격 제품은 적절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 비고 *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2		
	⑥ 사내표준에 규정되고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 비고 * 제조설비 :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자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공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4		
	⑦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비고 *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6		
	⑧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유행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유행유의 선택기준, 유행유의 양, 유행주기, 폐유행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2		
	계	26		

심사 사항	평가 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3. 제품의 품질관리 (10 항목 / 34점)	①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 항목과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4		
	② 품질수준이 한국산업 표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4		
	③ 제품검사 규정 내용이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로트의 구성(검사주기 포함)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비고 * 로트품질보증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등 * 외부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		
	④ 제품 품질항목별 시료채취방법 및 시험방법을 KS 표준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내 표준에 인용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2		
	⑤ 제품검사를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4		
	⑥ 제품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		
	⑦ 제품검사 담당자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비고 *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에 대한 이해 및 해석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2		
	⑧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적합기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와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 비고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6		
	⑨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비고 * 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분석 여부	4		
	⑩ 제품검사 분석결과,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품질항목을 관리하고 있는가?	2		
계		34		

심사 사항	평가 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4. 검사설비의 관리 (6항목 / 20점)	①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가?	2		
	※ 비교: 외주시에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공인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경우 시험검사 의뢰기관,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및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의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적합기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②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한가?	2		
	※ 비교 * 온·습도 관리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 등 시험·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			
	③ 시험·검사 설비 관리에 대한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4		
	※ 비교 *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설비의 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④ 시험·검사 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 및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4		
	⑤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있는가?	4		
	※ 비교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일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대상 측정기의 경우 교정증명서 부착으로 확인			
	⑥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성적서(화학분석설비의 경우 필요시 표준물질 인증성적서)를 활용하고 있는가?	4		
※ 비교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 성적내용을 시험결과 및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계	20		

4. 자재 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대표이사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해당 적합기준	제품명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재고량	시료 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름.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없음”

라. 시험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대표이사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6. 제품시험의뢰서

제 품 시 험 의뢰서 (인증심사용)		용 도		처리기간
		(적합인증 - 신규(종류·재료 및 호칭), 정기, 인증변경(종류·재료 및 호칭추가, 공장이전))		60일
수 신 : 제 목 :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 품질시험 의뢰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적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div>				
① 해당 적합기준	② 제품명 (적합기준명)	③ 종류·등급 또는 호칭	④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⑤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주1 : 검사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시험의뢰 시 제출한 시료 및 시편의 경우 3개월 이상 또는 적합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후 2개월까지 보관 후 폐기와 관련하여 기업에 회수여부 추가 확인(기업이 회수 의사가 없을 시 자체 폐기) 주2 : 검사기관은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원의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분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장기물성시험 등에 따라 처리기간 준수가 불가함을 사전에 인증원에 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의뢰인 소 속 : 한국물기술인증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전화번호 : 직 위 : 성 명 : (인) </div>				
첨부물 : 시험분석 시료 및 사용재료 확인서, 의뢰자 제품(치수) 규격				

<첨부 2>

사용 재료 확인서

제품명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사용부품 또는 사용개소	사용재료			비고
			표준번호	제품명	재료명	
						※ 재료 시험 이 있을 경우 재료시편을 제 작하여 시험기 관에 의뢰함.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7.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NO	주요설비명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공칭 능력 (제원, 정밀도)	제 작 자	설치년월	교정일자		비고
							교정기관		

위와 같이 제조(가공)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대표이사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8.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NO	구 분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공칭 능력 (제원, 정밀도)	제 작 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비고
							교정기관	

위와 같이 시험(검사)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입 회 자

대표이사 : (인)

품질관리 : (인)
담당자

<첨부 3>

의뢰자 제품(치수) 규격

1. 기준명 :

- 종류 :

- 호칭(A) :

2. 제품(치수) 규격

	구 분		치수 (mm)	

위와 같이 적합인증 제품(치수) 규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 5>

제품 및 사용 재료 사진

○ 제품명 :	○ 종류·등급 또는 호칭(A) :
○ 사용재료 시편	

위와 같이 적합인증신청 제품 및 사용재료 시편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대표이사 :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

품질관리 담당자 : (인)

공장심사 확인서

-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장심사일 :
- 신청구분 :
 - 인증제품(시료번호) :

공장심사 시 채취한 제품 및 시편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임을 확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업무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0 0 0	(서명)
담당자 :		0 0 0	(서명)
확인자 :	한국물기술인증원 심사위원	0 0 0	(서명)
	한국물기술인증원 심사위원	0 0 0	(서명)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신청서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을 통한 적합기준 제정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성 명 :
- 기 관 명 :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전화번호 :
- 주 소 :

2. 대상품목명 : (적합기준 제정 시 적합기준명)

3. 대상품목 지정 신청사유: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적합인증 대상품목 및 적합기준안에 대한 설명서 1부
2.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과의 차이점 1부
3. 해당 제품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3부
4. 참고문헌 및 기타자료 등

대상품목에 관한 설명서

대상품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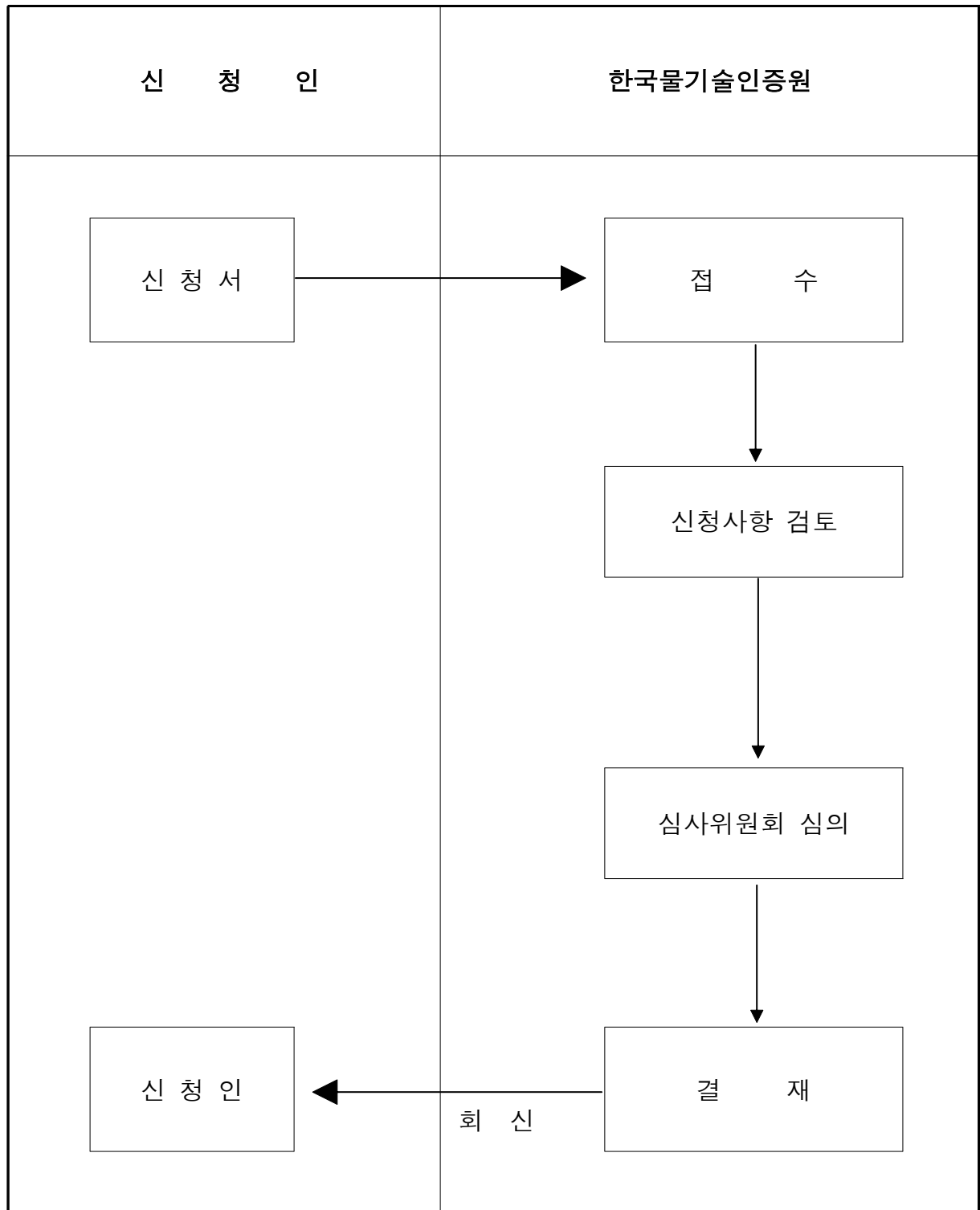
적합기준명

※ 대상품목 적합기준 제정의 취지

※ 기준 내용요약

※ 기대효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적합기준 개정에 관한 설명서

구 분

개정()

적합기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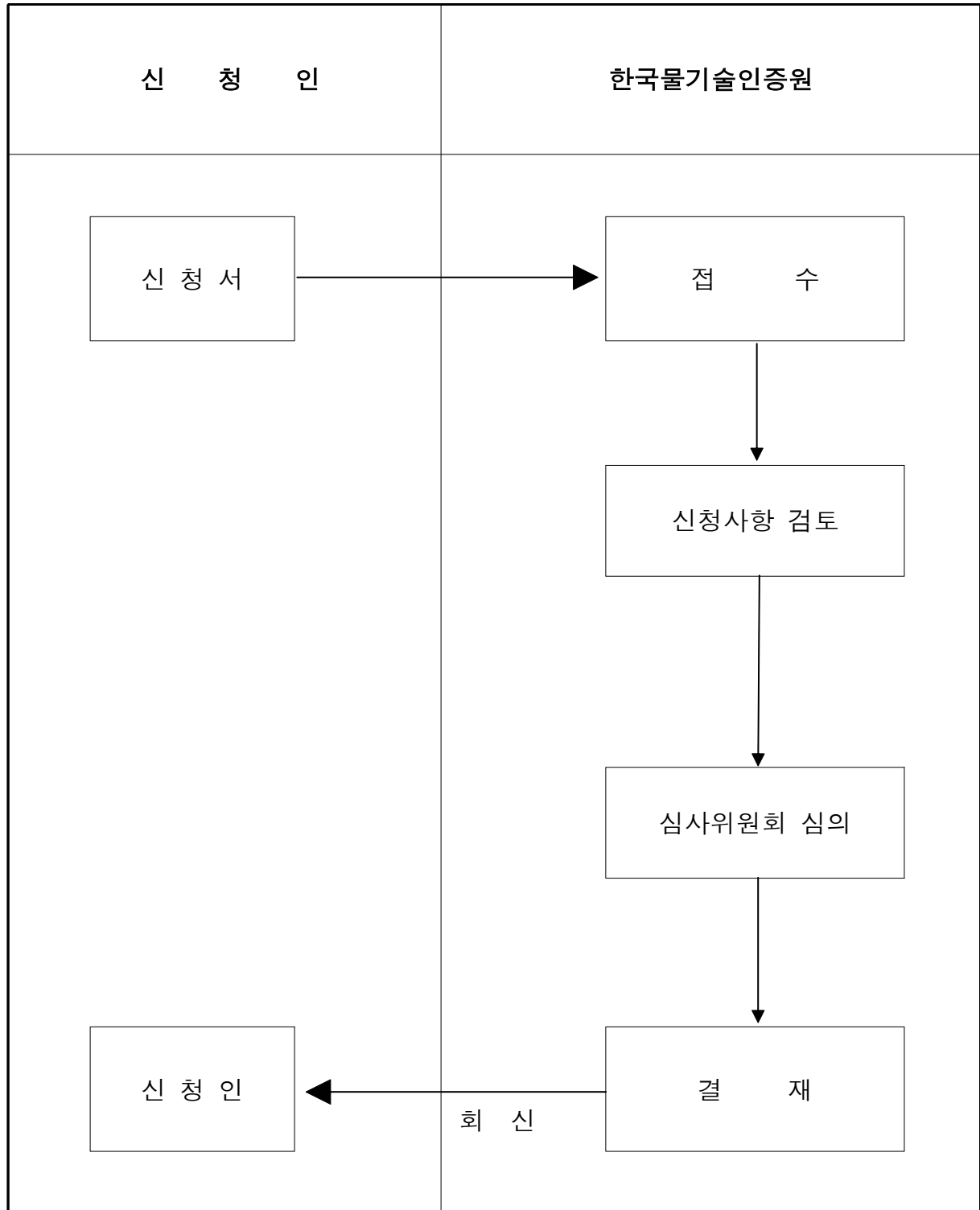
인증번호

※ 개정의 취지

※ 기준 내용요약

※ 기대효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서

1. 인증번호 : 제 호
2. 제조업체명 :
3. 대표자 성명 :
4. 공장(사업장)소재지 :
5. 인증제품
가. 기준명 :
나. 기준번호 :
다. 종류·등급·호칭 :
6. 인증유효기간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 및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및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인증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직인

※ 비고. 인증제품의 용도(상수용, 하수용, 상·하수도용)에 따라 인증서에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A)	비고

<변경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Certificates

1. Certificate No. : KIWATEC-CP-20 -
2. Name of Manufacturer :
3. Name of Representative :
4. Location of Factory :
5. Product Certified
 - 가. Name of Standard :
 - 나. Number of Standard :
 - 다. Type/Grade/Size : Refer to the Appendix.
6. Expiration Date : 20 . . . ~ 20 . . .

This is to certify the conformity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Article 24-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Water Supply and Waterworks, Article 10 of Sewerage Act) and Article 19 of Operation Outline of Conformance Certification for Water supply Materials and Products.

January __th, 20__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Signature)



※ Remark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certified product (water supply, sewage, water supply and sewage), the certificate is issued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ritten on it.

<Type · Grade · Size>

Type · Grade	Diameter(A)	Remarks

<Item Revised>

Date	Description	Checked by

<Disposition>

Date	Description	Checked by

<첨부1>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NO	구분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공칭능력 (제원,정밀도)	제작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2>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NO	구 분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공칭 능력 (제원,정밀도)	제 작 자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고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3>

자재 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우리 회사에서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 4>

사용 재료 확인서

제품명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사용부품 또는 사용개소	사용재료			비고
			표준번호	제품명	재료명	
						※ 재료 시험 이 있을 경우 재료시편을 제 작하여 시험기 관에 의뢰함.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첨부5>

KS 또는 단체표준과의 차이점(해당하는 경우)

KS 또는 단체표준명(번호)	구분	KS 또는 단체표준 제품	신청제품
	구조		
	사용 재료		
	호칭압력		
	사용호칭		

년 월 일

확 인 자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번호
		전자우편		
인정품목	⑥ 인증번호		⑦ 인증일자	년 월 일
	⑧ 제품명			
	⑨ 종류(등급) 또는 분야			
	⑩ 호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연월일(해당시 기재)	
⑪				
⑫				
⑬				
⑭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p>				
<p>※ 구비서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p>				

지위승계 신고서

신 청 인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 표 자 성 명		⑤사 업 자 번 호	
인 증 품 목	⑥인 증 번 호		⑦인 정 일 자	년 월 일
	⑧적 합 기 준 명		⑨종 류 (등 급)	
	⑩호 칭 지 림			
확 인 품 목	⑥인 증 번 호		⑦확 인 일 자	
	⑧적 합 기 준 명		⑨종 류 (등 급)	
	⑩호 칭 지 림			
승 계 사 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 계 년 월 일	
⑪업 체 명				
⑫대 표 자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회사합병 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위승계를 하는 기업과 받는 기업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12호 서식]

한국물기술인증원 적합인증제품 제조중단 신고서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인증사항	인 증 번 호		최초인증일자
	적합기준번호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중단기간			
중단사유			
<p style="color: blue;">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div>			

[별지 제13호 서식]

한국물기술인증원 적합인증제품 제조재개 신고서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인증사항	인 증 번 호		최초인증일자	
	적합기준번호			
	적합기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재개일자				
비 고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 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 style="color: blue;">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40px;">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p> <p style="margin-top: 20px;">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귀하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
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 직인장

[별지 제16호 서식]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인증번호:

계약 대상 인증 제품:

○○○○(인증받은 자 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계약”으로 한다.).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본 인증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적합인증이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적합인증 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적합인증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5. 공장 또는 사업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6. 공장심사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적합인증 및 적합인증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품질이 해당 적합인증 및 적합인증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합인증 및 적합인증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9.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의 기준명

10.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품목별 적합기준, 인증심사기준 및 적합인증 운영요령

제2조(권리 및 의무)

1. 을은 갑에 대하여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근거한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에 동의한다.
2. 갑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받은 제품이 적합인증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갑은 제품심사 시 을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적합인증 운영요령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을이 심사의 일부를 을과 계약에 의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적합인증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적합인증의 명칭 및 번호
- (2) 적합인증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 (3) 인증번호
- (4) 적합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 (6) 인증기관명
- (7) 적합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 (8) 적합기준에서 제품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 (9) 기타 을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적합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제1조 10항의 을이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3항, 4항, 5항, 6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에 동의한다. 갑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적합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적합인증 마크의 표시는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계약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4조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의 체결일(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정기심사 일괄신청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인증계약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인증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1. 갑은 을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을은 갑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인증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제품)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괄신청 품목의 인증 만료일은 일괄신청한 품목 중 가장 앞선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갑은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공장이전 심사 이후의 정기심사는 공장이전 심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적합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 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때 갑에 대하여 특별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납품 수요처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4)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인증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생산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6) 인증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적합기준을 제·개정하는 이해관계자 간에 적합기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증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9)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적합기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10) 그 밖에 적합인증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다.
-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특별현장조사 결과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인증위원장이 인증제품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 등에 관한 사내표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을은 정기심사 시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등급, 호칭, 재료)에 관하여 인증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등급, 호칭 또는 재료를 추가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의 일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인증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2)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의 공표 등)

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이 인증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인증번호
- (2) 제조업체명
- (3) 대표자 성명
- (4) 공장 소재지
- (5) 인증제품(기준명)
- (6) 인증에 관계되는 수도법령의 근거 조항
- (7) 인증서 교부일
- (8) 인증기관명

제10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에 대한 인증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을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적합인증 및 적합기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을의 인증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인증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6조(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1. 을은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5조의 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인증 받은 제품이 적합인증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을은 갑의 인증제품이 적합인증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처분 및 확인심사,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적합인증마크를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이 인증제품이 해당 적합인증 및 적합인증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정기심사 또는 공장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3) 정기심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인증제품이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
 -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7) 적합인증 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8) 정기심사 등의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종합평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9)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한 때
 - (10) 제16조 3항에 따른 적합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1) 제17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을은 1항의 인증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갑이 을에 대한 채무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2)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19조(인증받은 자의 의견제출 절차)

- 1.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0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서비스의 경우,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적합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이 인증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인증원으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 사항
-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인증 운영요령에 정한 사항
- (7)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지위승계에 대한 사항
- (8) 인증받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에 대한 사항

제22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 통지 의무)

을은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 (2) 을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인증기관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 (3) 을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제23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2. 갑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신청수수료의 1/2를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공장심사 개시 이후와 공장심사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을은 납부 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인증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인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이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달했을 때
2. 이 인증계약 제18조에 따라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5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6조(이 인증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7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기타)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그 1통씩을 보유한다.

인증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갑: 주소

회사명(공장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

을: 주소

인증기관 이름:

대표자명:

시료재채취 신청 동의서

기업명 :

공장심사일 :

신청구분 :

신청제품(시료번호) :

신청사유: (예: 시료 준비 미비, 신청제품 관련 추가 확인 필요 등)

상기 사유로 인하여 배정된 공장심사일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동의하며, 심사 완료를 위하여 공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정보망에 시료재채취를 신청해야 함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 (서명)

담 당 자 : (서명)

확 인 자 : 한국물기술인증원 (서명)

한국물기술인증원 (서명)